

日政時 우리나라의 林野稅制*1

鄭 佐 容*2

〈林野稅〉

1. 問題의 發生

日政時 1,000萬町步의 民有林野에 對한 保護에 있어서 各郡의 專擔 保護員(森林主事)外에 一線의 保護業務는 主로 森林組合 保護員으로 하여금 分擔케 하여 왔으나 林野調查事業의 完結(1919, 大正 8. ~ '35, 昭和 10)과 火田의 整理 民有林 經營에 對한 指導方針의 樹立('33, 昭 8) 實施와 함께 民有林保護의 徹底를 期할 必要性을 痛感하게 되었다. 따라서 1) 各道 特殊事情에 맞도록 植林事業을 實施함에는 地方費로 繼承시킴이 適當하며 2) 森林의 保護도 地方費로 實施함이 適當하며 3) 이미 '27年의 總督부 稅制調査會에서 地方稅로서 林野稅를 徵收하여 地方費 財源에 充當함이 옳다는 意見 등으로 從來 徵收하던 森林組合費 대신 地方稅인 林野稅를 徵收하여 森林 保護費의 財源으로 充當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從來의 組合費 145萬圓('32)을 90萬圓 程度로 引下 調整하려 하였다. 林野稅 實施前의 各道 林野主任 協議會에서 總督부 農林局長은 「森林의 保護事業等은 當然히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서 行하여야 할 것이며 森林組合에서 行함은 適當한 施策이 아니며 組合費의 賦課方法도 不公正하기 쉽고 또 負擔의 輕減도 考慮할 必要가 있고 從前 組合費는 1町當平均 15.5錢이나 林野稅는 1町當 平均 10錢內外 이며 이것은 日本 本土의 林野의 負擔額 即 地租 및 其附加稅 1町當 平均 29.4錢外에 所得稅와 其附加稅와 各種地方稅에 比하여 決코 過重한 負擔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一般 土地中 田, 畓, 堡, 池沼等에는 土地賃貸價格에 對한 100%의 5의 地稅를 賦課 하였으나 林野, 墳墓地, 公園地 公共用地等은 地稅의 賦課 對象에서 除外 되었으며('14. 地稅令, '43. 昭 18. 朝鮮地稅令) 地方稅로서는 地稅, 營業稅, 鑛稅, 林野稅, 家屋稅가 있었고('36. 昭 11. 地方稅 賦課에 關한件) 市 邑面稅인 同附加稅에는 林野稅 附加稅는 除外되었다.('31 昭 6. 府制 및 邑面制에 規定하는 府稅 및 邑面稅 指定—告示)

2. 經過措置

產業團體의 統一整理에 關한 件('32. 11. 昭 7. 政務總監 通牒=以下同)으로서 農會와 畜產同業組合은 이것을 合併하고 森林組合은 廢止하여 其事業은 道地方費에 移屬 시켰으며 다시 森林組合의 事業을 道地方費에 移屬시키는 件('32. 11. 同)과 森林組合의 事業을 承繼함에 要하는 道地方費 豫算의 計上 方法('32. 11同)에서 組合事業의 承繼와 節次 및 林野稅 賦課의 大綱을 定하였다. 其 內容의 要點은 1) 從來 森林組合費의 8割以內에서 林野稅를 부과하고 2) 組合事業을 道地方費에 移屬 시키고 3) 부과 對象은 林野所有者로 하고 4) 徵收費는 林野 稅額의 1割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고 5) 從來 森組에 交付하던 國庫補助는 계속 道地方費에 補助하고 6) 林野稅源으로 保護職을 두되 其數는 1,398名(森組職員 1910名에 比하여 512名減)으로 하기로 되었다.

3. 內 容

위와같은 一連의 措置後에 林野 賦課規則 準則('33. 1. 昭 8. 同)을 定하였고 이에 따라 各道는 林野稅 賦課 規則을 定하여 各各 實施하였다. (例 慶尙南道 林野稅 賦課 規則 '33. 4. 1. 道令 8號; 忠北道令 第17號 同日字) 其 內容은 1) 부과方法은 林野面積 比率로 一定率을 適用하여 부과하되 地利에 따른 地域等級(1, 2, 3, 의 3개 등급)과 生産力에 따른 林野等級(特上, 中, 下의 4개 등급)으로 管內 林野를 區分하여 適用率에 差等を 두었다. 그러나 地方道에 따라 地域을 3~5개 等級으로 區分 하였다. 表 1. 과 같이 5개道는 5등급, 2개道는 4등급, 其他는 3등급으로 區分하였다. 2) 賦課稅額은 表 1과 같으며 地方에 따라 隔差가 甚하다. (實施當年) 3) 納付方法은 年額은 2分하여 2期分期別 納付토록 하고 2원 以下는 一時에 증수 하도록 하였으며 4) 부과除外地는 ① 貸付中의 國有林野 或은 占有中인 緣故林野 ② 保安林 ③ 模範林과 學校林 ④ 一邑面內 1人의 所有面積 5段步 未滿의 것 ⑤ 砂磧地, 濕地, 干瀉地로 되어 있었다. 其後 同一地番內의 一部가 保安林

*1 Korean Forest Taxation in the Times of Japanese Administration

*2 Jwa Yong Chung, 慶尙大學, Kyongsang National University

表 1. 各道林野稅 賦課額表 1933년(昭 8)現在 單位厘, 町當

地域等級	林野等級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南	平北	江原	咸南
一	特	33	—	—	31	58	—	(31)	21	26	81	16	11.3
	上	30	30	27	28	48	21	26(26)	19	23	72	15	10.1
	中	27	23	22	26	38	18	20(20)	17	20	63	13	8.8
	下	25	15	16	23	29	14	15(15)	16	17	54	12	—
二	特	29	—	—	26	48	—	(26)	17	23	72	15	11.6
	上	26	24	23	24	40	18	21(21)	16	20	64	13	10.4
	中	24	18	18	22	32	15	17(17)	15	17	56	12	7.2
	下	22	12	14	19	24	12	13(13)	13	14	48	11	8.1
三	特	25	—	—	21	38	—	(20)	14	20	63	12	—
	上	23	18	19	19	32	16	17(17)	13	17	56	11	9.5
	中	21	14	15	17	26	13	14(14)	12	14	49	10	8.4
	下	18	09	11	15	19	11	10(10)	10	12	42	9	7.4
四	特	21	—	—	15	29	—	—	—	17	—	—	—
	上	19	12	—	14	24	13	—	—	14	—	—	8.5
	中	17	09	—	13	19	11	—	—	12	—	—	7.6
	下	15	06	—	12	14	09	—	—	10	—	—	6.6
五	特	16	—	—	—	—	—	—	—	14	—	—	—
	上	15	06	—	—	—	11	—	—	12	—	—	7.6
	中	14	05	—	—	—	09	—	—	10	—	—	6.7
	下	12	03	—	—	—	07	—	—	08	—	—	5.9

비고 : 慶南()는 1935년도 現在임

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分割 申告하도록 하고 模範 林은 一邑面에 20ha를, 學校林은 國民학교는 20ha, 中學校는 40ha를 最大限으로 하여 除外 對象 面積을 制限 하였다.

4. 林野稅 豫算

表 2와 같이 1938년도(昭 13) 全國의 道費 林業關係 豫算額中 林野稅 約126萬圓은 經常部의 56.9%, 全體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또 歲出中 林野保護費 및 關係 諸費는 118萬圓이며 林野稅源으로서 保護費에 充當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當時 民有林野 面積 約975萬 町步와 對比하면 町當 부과率은 13錢이다.

表 2. 全國道費林業關係 豫算額表 (단위 : 圓)

① 歲入 (1938. 昭 13)

경 상 부		임 시 부	합계 (D)
임야세 (A)	경상부세 (B)		
1,264,371	2,221,084	7,547,333	9,768,417

비고 : A/B=56.9%, A/D=12.9%

② 歲出 경상부內 林野保護費 1,065,354
 林野稅關係課費 111,167
 계 1,179,521

한편 1940년도(昭 15)의 慶南道の 林野稅는 11.5萬 圓이며 道林業關係 歲入合計의 5.8%, 경상歲入의 58.7%이며 道內 私有林野 町當 16錢으로 되어 있다.

<山林 所得稅> (朝鮮所得稅令 '34 昭 9)

1940年 改正令에 의하면 山林所得은 第三種의 所得 第3條)으로 類別되었고 其 所得은 前年中의 總收入 金額에서 必要의 經費를 控除한 金額으로서 算出하였다 (第 15條). 第3種 所得의 免稅額은 800圓이며 賦課方式은 所謂 5分乘方式을 適用 하였다. 即 各其 所得을 5分한 金額에 對하여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金額을 5倍한 것을 各其의 稅額으로 하였다. 또 所得金額을 各級으로 區分하여 累進的으로 各稅率을 適用하여 賦課하였다. 所得金額은 800원(稅率 0.6/100)에서 400萬 원을 超過하는 金額(稅率 57/100)까지 22階段으로 級分하였다. (36條)

<木材 關稅>

舊韓國 時代의 木材關稅는 木材 板類는 鑑定價格의 7.5分 建築切組材는 5.0分이었으며 其後 朝鮮關稅令

('12 明 45)에서는 軟木 0.75割, 硬木 1.00割로 되었다. 其後 關稅法 등을 朝鮮에 施行하는件('20, 8, 28, 大正9)을 制定하여 日本 本土의 關稅法, 關稅定率法, 保稅倉庫法, 假置場法 등을 朝鮮에 施行하게 됨으로서 日本 本土와 共通關稅 制度를 確立하였다. 其後 朝鮮 關稅定率法을 따로 定하여 一部 補完 하였고 隣接 滿洲國과 日本 本土의 木材 流通 事情等과 함께 數次의 改廢가 있었다. 1933년(昭 8, 3) 定率을 引上하여 낙엽송 美松 南洋材는 1m³當 2.00圓으로 引上 하였다. 1939(昭 14)년의 關稅定率法 改正에 의하면(別表 輸入稅表) Cork用 樹皮와 木材中 Lignumvitae, Teak와 輸入木材 主宗인 Pine, fir, Cedar(美松) 其他의 針葉樹 가운데 長20cm, 幅 7cm, 厚 7mm를 넘지 않는 Cedar와 Pinus屬(紅松等), Douglas fir等の 長18m를 넘고 末口直徑 30cm를 넘지 않는 통나무 및 割材와 一般 薪材는 無稅로 하였다. 木材中 가장 低率은 Douglas fir等の 長10m를 넘고 末口直徑 30cm를 넘지 않는 통나무 및 割材는 每m³當 2.00圓이고 最高率은 厚200mm를 넘지 않는 White Cedar 및 Yellow Cedar等の 每當 9.85圓에 이르기까지 樹種別 規格別로 差等을 둔 從量稅였다. 貴重材인 Mahogany, Oak는 從價의 5分 稅率이고, 竹은 每 100斤當 1.70원 桐은 每 100斤當 0.90원으로 되었다. 其外에 植物, 枝, 幹, 莖 및 根(栽植用 또는 接木用的 것)은 無稅로 하였다.

〈營業稅〉(朝鮮營業稅令 '27 昭2)

1940년 改正에 의하면 該營業體를 總 24業種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木材關連業種은 製造業(物品의 加工 修理를 包含)인 製材所와 物品 販賣業인 薪炭業이 該當된다. (第1條) 個人的 營業으로서 製造業에서는 1月の 收入金額 3,000圓 未滿인(課稅標準額)경우에는 營業稅를 부과하지 않았다. 製造業의 課稅標準은 收入金額으

로 하여 製材業의 稅率은 萬分の 12이며 物品 販賣業의 課稅標準은 賣上金額이며 薪炭業은 都賣는 萬分の 6, 小賣는 萬分の 12를 課稅하였다.

〈登錄稅 等〉(朝鮮登錄稅令 '12.3 明 45)

1940년 改正에 의하면 不動產 登記에 있어서 相續取得은 不動產價格의 5/1,000, 贈與, 遺贈 其他 無償名義 取得은 40/1000, 所有權의 保存과 共有物의 分割은 5/1000, 相續財產의 分離는 5.5/1000로 되어있다. 또 相續稅는(朝鮮相續稅令 '34 昭 9. 改正 '40) 家督또는 戶主相續은 19段으로 區分하여 5,000圓 以下(稅率 6/1,000~10/1,000)에서 500萬圓을 초과하는 金額(稅率 220/1,000~280/1,000)으로 또 遺產相續—또는 戶主相續이 아닌 財產相續은 1,000圓以下(稅率 12/1,000~20/1,000)에서 500萬圓을 넘는 金額(稅率 320/1,000~370/1,000)까지 累進稅率을 適用하였다. 끝.

參 考 圖 書

1. 朝鮮山林會 朝鮮林務提要 昭 10
2. 慶南道 慶南道林務例規 昭 10
3. 慶尙道 林業關係歲入歲出豫算書 昭 15
4. 朝鮮總督府編 朝鮮의 林業 昭 13
5. 朝鮮總督府編 朝鮮法令輯覽(上卷) 昭 7
6. 朝鮮總督府編 朝鮮法令輯覽(上卷) 昭 15
7. 加島謙次 新式六法全書 昭 11.
8. 三省堂 模範六法全書 昭 18
9. 朝鮮總督府 法令輯覽 昭 18
10. 朝鮮山林會 朝鮮林業史(下卷) 18
11. 昭島田錦藏 林政學概要 昭 36
12. 荻野敏雄 朝鮮·滿洲·臺灣林業發達史論 昭 40
13. 鹽谷 勉 林政學 昭 48